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의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조사·측량자의 토지출입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지정서 및 토지 출입허가증 개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책임수행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허가증을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적측량수행자 선정)”을 “(책임수행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앞 쪽)

제 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자 허가증
사 진 3cm×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mm×85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자 허가증
소속 /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예의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 직인 군수·구청장
1.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시에 반드시 이 허가증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전국, 00권역, 00시·도)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적측량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유장비 현황 및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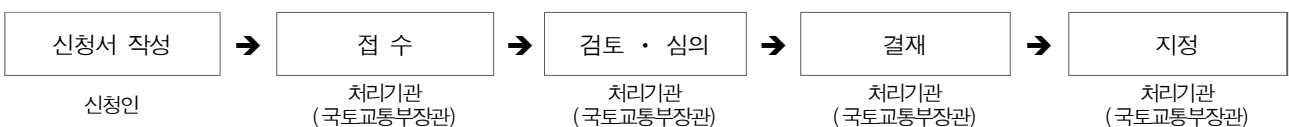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전국, 00권역, 00시·도)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동의서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제3조(동의서 등) ① 영 제7조제2항----- ----- ----- ----- -----. ② (현행과 같음)		